

기 공지한 “2013년도(5차)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계획” 내용 중

「**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분울_고위험군**」 과 「**욕창 개선환자분울_고위험군**, **욕창 악화환자분울_고위험군**」
일부 수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.

- 아 래 -

구분	기 공지내용	변경 공지내용	비고
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분울_고위험군 - 고위험군: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환자 1.~3. 생략 4. 사지마비인 경우 ○ 제외대상: 생략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분울_고위험군 - 고위험군: 좌동 1.~3. 생략 4. 사지마비, 하지마비, 척수손상인 경우 ○ 제외대상: 생략 	하지마비, 척수손상 추가
2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욕창개선 환자분울_고위험군 - 고위험군: 생략 1.~4. 생략 - 욕창의 개선: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1. 전월에 욕창이 있던 상태에서 개수가 줄어든 경우 2. 전월에 욕창이 있던 상태에서 단계가 낮아진 경우 ○ 제외대상: 생략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욕창개선 환자분울_고위험군좌동 - 고위험군: 좌동 1.~4. 생략 - 욕창의 개선: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1. 전월에 욕창이 있던 상태에서 총개수가 줄어든 경우 2. 전월에 욕창이 있던 상태에서 최고 단계가 낮아진 경우 ○ 제외대상: 좌동 	욕창의 개수와 단계를 명확히 함
3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욕창이 악화된 환자분울_고위험군 - 고위험군: 생략 1.~4. 생략 -욕창의 악화: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1. 전월에 욕창이 있던 상태에서 개수가 늘어난 경우 2. 전월에 욕창이 있던 상태에서 단계가 심해진 경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욕창이 악화된 환자분울_고위험군 - 고위험군: 생략 1.~4. 생략 - 욕창의 악화: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1. 전월에 욕창이 있던 상태에서 총개수가 늘어난 경우 2. 전월에 욕창이 있던 상태에서 최고 단계가 심해진 경우 	욕창의 개수와 단계를 명확히 함

